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532	시 민			
결재일자	2013. 4. 3.	주무관	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생명존중, 사람사랑 서울응급의료’

2013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계획

2013. 3.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교육참여) 무
	● 이 해 당 사 자 : 유 () 무
	● 전 문 가 : 유 (응급의학과전문의 응급구조사) 무
	● 움 브 즈 만 : 유 () 무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무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중 앙 부 처 : 유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무
타 자 원 의 활 용	● 민 간 단 체 : 유 () 무
	● 기 업 : 유 () 무
	● 관 계 기 관 : 유 () 무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민 간 단 체 : 유 () 무
	● 시 산 하 기 관 : 유 (25개 자치구 보건소) 무

2013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계획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응급처치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소생률을 높이고자 함

I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교육)
 - 응급의료종사자 아닌 자로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계획 수립)
 -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 수립해야 함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II 추진배경

- 최근 서울시 심정지 발생률 증가
 - 인구10만명당 2008년 32.9명→ 2010년 37.6명(14.3% 증가)
- 서울시민의 심정지 생존 퇴원율은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2006년 3.9% → 2010년 6.3%(선진국 15%~40%)
-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 대처역량 미흡(보건복지부, 2010)
 - 일반시민 심폐소생술 실시율 6.5% (전국평균 3.2%)
 - 구급대원 심폐소생술 실시율 74.1% (전국평균 79.1%)
 - 구급대원 AED 적용율 22.4% (전국평균 32.7%)

III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서울시 일반시민 및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실시율 향상
 - 일반시민 : 6.5%(‘10년)⇒ 8.5%(‘15년)
 - 구급대원 : 74.1%(‘10년)⇒ 80%(‘15년)
 - 구급대원 AED 적용율 : 22.4%(‘10년)⇒ 30%(‘15년)
 - *전국평균 : 일반인 3.2%, 구급대원 79.7%, 구급대원 AED적용율 32.7%
 - 2015년 까지 심폐소생 교육인원 연2만명 이상 실시

구 분	2013년(명)	2014년(명)	2015년(명)
계	213,500	234,200	265,000
일반시민(자치구)	200,000	220,000	250,000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	4,500	4,700	5,000
이동식차량 교육	9,000	9,500	10,000

추진방향

- 자치구 보건소의 응급의료 역량강화를 통한 자체 시민교육 확산
-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운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내실화
- 응급처치 이동식교육 차량 활용으로 대시민 홍보·교육활동 강화
-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이수 강화(보건소 성과평가에 반영)

IV ‘12년 추진실적

(단위 : 명, %)

총	자치구 교육			서울대병원 위탁교육			이동식 차량 교육		
	목 표	실 적	달 성 률	목 표	실 적	달 성 률	목 표	실 적	달 성 률
186,897	112,500	173,605	154.3	5,000	4,167	83.3	7,500	8,825	117.6

1 자치구 보건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사업개요

- 사업명 : 『시민 응급 서포터즈』 양성
- 교육목표 : 200,000명
 ※ 서울시민 10,443천명 중 1.91%이며 자치구 인구수 당 최소 1.5%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량 제시 **【붙임 1】**
- 교육대상 : 일반시민, 초·중·고 학생, 직장인, 단체, 다중이용 시설 종사자, 다중집합 교육생 등
- 추진방법 : 구별 특성에 맞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체수립및 추진
- 교육내용 : 생활속 응급처치 및 기본인명구조술, AED이론 및 실습
- 사업예산 : 270,000 천원 (국비:시비=50%:50%)
- 사업기간 : 2011.3. ~ 11.

□ 자치구 예산지원

- 지원기준 : 2012년도 자치구 인구대비 응급교육 수료율 평가 후 차등 지원
- 지원액 : 자치구당 12,000천원~10,000원 **【붙임 2】**

구분	상위 10개구	그외 15개구	비고
지원액	자치구당 12,000천원	자치구당 10,000천원	
자치구명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10개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15개구)	

- 예산액 : 270,000 천원
 - 예산과목 :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및민간의료기관이용편리성확대,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구조및응급처치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사업평가

- 평가지표 : 자치구별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수
 - 자치구민 중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수(8할)
 - 구조 및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중 교육이수자 수(2할)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보건소 인센티브 부여
 ※ 2014년도 자치구 예산지원시 참조

2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상설 교육과정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명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정』 운영
- 사업목표 : 4,500명
- 추진방법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약에 의거 위탁운영 **【붙임 3】**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학교 병원 위탁 사유
 - 위탁근거: 복지부, 2013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침
 -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서울시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환자의 최종진료 및 각종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훈련, 응급환자 등에 대한 각종 의료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교육과정 운영

- 교육기간 : 2013. 4월~11월
-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
- 교육대상 선정기준 **【붙임 4】**
 - 심 질환으로 치료중인 보호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대상자
 - 제세동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등
 -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심폐소생술 교육
 - 해당연도 전체 교육인원에서 특정 시설·직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전체대상자의 20% 이내로 한정
 (예 : 특정시설 특정직업군 : 요양보호시설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교육인원 편성기준 : 1회 50명 이내
 - 교육생 15명당 실습보조강사 1인 배치
 - 교육생 5명당 마네킨 1개 배치
 - 교육생 10명당 자동제세동기 1대 배치

○ 교육내용 및 수료증 교부

- 교육내용 및 시간(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교육 내용	교육 시간
1.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1 시간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 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 시간

- 수료증 교부 **【붙임 5】**
- 기록물 관리 : 수료증 발급대장 **【붙임 6】** , **【붙임 7】**
교육대상자 종사분야별 교육결과 **【붙임 8】**
- 사업예산 : 90,000 천원 (국비:시비=50%:50%)
 - 예산과목 :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및민간의료기관이용편리성확대,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구조및응급처치교육, 민간경상보조금

□ 위탁기관 사업평가

○ 평가지표

- 교육과정 운영 횟수
-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이수자 수
- 교육인원 편성기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준수 여부
- 교육 수료증 발급 및 기록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교부기준 준수여부, 회계관리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
- 기타 서울시가 제시하는 세부기준의 준수여부 등

○ 평가결과 활용

- 2014년도 위탁기관 선정시 반영

3 이동식 차량활용의 심폐소생술 교육

□ 사업개요

- 사업명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 교육목표 : 7,500명
- 추진방법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약에 의거 위탁운영 **【붙임 3】**
 -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학교 병원 위탁사유
 - 이동식 심폐소생술 교육차량은 서울시내 유일하게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에 1대 구비되어 있음
- 교육대상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 교육대상자, 일반시민 등
- 교육장소 : 기업체, 관공서, 행사장, 경기장, 공원 등 다중이용장소 등
- 교육내용
 - 응급구조 및 활동의 원칙, 내용, 응급의료관련 법령
 - 기본인명구조술 및 AED 이론 및 실습, 자치구 및 관계자 워크샵
- 사업기간 : 2014. 4월~11월
- 사업예산 : 50,000 천원 (시비 100%)
 - 예산과목 :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및민간의료기관이용편리성확대,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구조및응급처치교육, 민간경상보조금

□ 위탁기관 사업평가지표

- 이동차량 출동 횟수, 교육이수자 수, 교육이수자 기록물 관리
- 보조금 교부기준 준수여부, 회계관리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
- 기타 서울시가 제시하는 세부기준의 준수여부 등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내
“이동식 심폐소생술 교육차량”



4 서울시 응급의료사업 홍보계획

□ 비전 및 추진방향

○ 비전 : ‘ 생명존중 · 사람사랑 · 건강도시 서울 응급의료’

○ 홍보방향

- 응급의료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는 공감대 형성
- 서울시 응급체계의 높은 수준과 전문성부각
- 시민을 위한 준비된 응급의료
- 네트워크 강화로 공유하고 함께하는 응급의료
-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 사업내용

○ 서울시 응급의료 브랜드 이미지 구축(4월~5월)

- 사업내용 : 서울시 응급의료 BI 및 Naming 제작
- 제작방법 : 디자인 전문업체 계약수행
- 사업예산 : 30,000천원(응급의료발전기금)

○ 자치구 지역사회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 지역사회 공공기관 홈페이지 활용
- 지역사회 행사·축제 연계, 상설교육장 운영
- 시민 서포터즈, 건강리더, 응급환자 구조사례 소개

○ 이동식 교육차량 및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한 대면홍보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차량	지역행사 응급처치 코너운영	생활주변 응급교육
		

○ 홍보자료 활용 : 포스터, 소책자, 리플렛 등

공공장소 대형 포스터	실내용 소형 포스터	소책자
		

□ 사업효과

- 서울시 응급의료 서비스의 사회적 인식 제고
- 응급의료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 및 가치 부각
-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단계간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구심점 역할

VI 향 후 일 정

○ 자치구 응급의료 담당자 회의	4. 9.(화)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 체결, BI 제작	4월 중순
○ 응급처치 교육 진행	4월 ~ 11월
○ 사업 진행 결과 모니터링	반기 1회

- 【붙임】**
- 2013년도 자치구별 사업 목표
 - 2013년도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내역
 - 응급의료 사업 협약서 (안)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발급대상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발급대상 (심질환 환자 보호자용)
 - 교육대상자 종사분야별 교육결과

【붙임 1】

2013년도 자치구별 사업 목표

순번	자치구명	인 구	2012년도 결과		2013년도 목표		비고
			수료인원 (명)	교육 수료율	목표인원 (명)	교육 수료율	
1	종로구	173,148	1,546	0.89%	2,597	1.50%	
2	중구	140,807	5,141	3.65%	4,224	3.00%	
3	용산구	255,294	867	0.34%	3,829	1.50%	
4	성동구	306,868	1,854	0.60%	4,603	1.50%	
5	광진구	384,269	2,203	0.57%	5,764	1.50%	
6	동대문구	375,683	6,926	1.84%	7,514	2.00%	
7	중랑구	423,655	1,673	0.39%	6,355	1.50%	
8	성북구	490,639	3,984	0.81%	7,360	1.50%	
9	강북구	346,493	11,365	3.28%	10,395	3.00%	
10	도봉구	364,454	9,622	2.64%	7,289	2.00%	
11	노원구	600,829	11,952	1.99%	12,017	2.00%	
12	은평구	505,902	4,368	0.86%	7,589	1.50%	
13	서대문구	324,733	1,240	0.38%	4,871	1.50%	
14	마포구	393,576	6,549	1.66%	7,872	2.00%	
15	양천구	500,533	1,811	0.36%	7,508	1.50%	
16	강서구	573,794	14,534	2.53%	11,476	2.00%	
17	구로구	454,478	4,661	1.03%	6,817	1.50%	
18	금천구	260,734	2,673	1.03%	3,911	1.50%	
19	영등포구	426,876	6,073	1.42%	6,403	1.50%	
20	동작구	416,268	16,947	4.07%	12,488	3.00%	
21	관악구	540,520	8,657	1.60%	10,810	2.00%	
22	서초구	439,998	14,678	3.34%	13,200	3.00%	
23	강남구	569,997	22,872	4.01%	17,100	3.00%	
24	송파구	680,150	3,322	0.49%	10,202	1.50%	
25	강동구	492,728	8,087	1.64%	9,855	2.00%	
총계	25개구	10,442,426	173,605	1.66%	202,048	1.93%	

【붙임 2】

2013년도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내역

순번	자치구명	인 구	2012년도 결과		2013년도 목표		예산배부 (천원)	비고
			수료인원 (명)	교육 수료율	목표인원 (명)	교육 수료율		
1	종로구	173,148	1,546	0.89%	2,597	1.50%	10,000	
2	중구	140,807	5,141	3.65%	4,224	3.00%	12,000	
3	용산구	255,294	867	0.34%	3,829	1.50%	10,000	
4	성동구	306,868	1,854	0.60%	4,603	1.50%	10,000	
5	광진구	384,269	2,203	0.57%	5,764	1.50%	10,000	
6	동대문구	375,683	6,926	1.84%	7,514	2.00%	12,000	
7	중랑구	423,655	1,673	0.39%	6,355	1.50%	10,000	
8	성북구	490,639	3,984	0.81%	7,360	1.50%	10,000	
9	강북구	346,493	11,365	3.28%	10,395	3.00%	12,000	
10	도봉구	364,454	9,622	2.64%	7,289	2.00%	12,000	
11	노원구	600,829	11,952	1.99%	12,017	2.00%	12,000	
12	은평구	505,902	4,368	0.86%	7,589	1.50%	10,000	
13	서대문구	324,733	1,240	0.38%	4,871	1.50%	10,000	
14	마포구	393,576	6,549	1.66%	7,872	2.00%	12,000	
15	양천구	500,533	1,811	0.36%	7,508	1.50%	10,000	
16	강서구	573,794	14,534	2.53%	11,476	2.00%	12,000	
17	구로구	454,478	4,661	1.03%	6,817	1.50%	10,000	
18	금천구	260,734	2,673	1.03%	3,911	1.50%	10,000	
19	영등포구	426,876	6,073	1.42%	6,403	1.50%	10,000	
20	동작구	416,268	16,947	4.07%	12,488	3.00%	12,000	
21	관악구	540,520	8,657	1.60%	10,810	2.00%	10,000	
22	서초구	439,998	14,678	3.34%	13,200	3.00%	12,000	
23	강남구	569,997	22,872	4.01%	17,100	3.00%	12,000	
24	송파구	680,150	3,322	0.49%	10,202	1.50%	10,000	
25	강동구	492,728	8,087	1.64%	9,855	2.00%	10,000	
총계	25개구	10,442,426	173,605	1.66%	202,048	1.93%	270,000	

※ 예산배부 기준

- 2012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시행 결과 상위 10개 자치구별 12,000천원 교부 그 외 15개 자치구별 10,000천원 교부
- 2012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시행 결과 상위 10개 구 :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붙임 3】

응급의료 사업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와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학교 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이라 한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응급의료 업무(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사업의 관리를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① “서울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서울대병원”에게 위탁하며 “서울대병원”은 이 사업의 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법정의무대상자)
- 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동 교육차량운영 포함)
- 3. 대량재해 대비 훈련(교육) : 자체 및 합동훈련
- 4. 현장응급의료소 훈련
- 5. 기타, 응급의료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여 승인 하거나 요청하는 사업

② “서울대병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지역은 “서울시”의 관할구역 전 지역과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서울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 이 협약서에 의하여 “서울대병원”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간은 이 협약서가 체결된 날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시점까지 갱신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3의 사업 수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체결 또는 제3자와 사업을 인수·인계 할 때까지 “서울대병원”이 사업을 계속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대병원”은 당해년도 말까지 다음년도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그 계획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다음년도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한다.(단, 2013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협약서를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수립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서울대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서울대병원”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수행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이 협약서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울시”가 부담한다.

② “서울대병원”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시”의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사업비를 관리·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하되, “서울대병원”은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서울시”에 정산·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체없이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서울대병원”의 의무) ① “서울대병원”은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 2. 이 협약서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연 또는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이 협약서에 의한 “서울시”의 지시 또는 지침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4.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행위.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재 위탁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는 제외
- ② “서울대병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 제출 시에는 당해 사업추진실적과 사업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협약서에 의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은 “서울대병원”이 진다. 다만, 그 귀책사유가 “서울시”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 ②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의 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대병원”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서울대병원”이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협약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협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석 등)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대병원”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이 협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재판관할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위탁기간이 만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각종 재판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의 종료 또는 재판절차의 종료시까지 그 사건·사고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계속된다.

② 이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서울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시장 박 원 순(인)

“서울대병원”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장(서울대학교병원장) 정 희 원 (인)

【붙임 4】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1. 심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 보호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분	설 명
구 급 차 등 의 운 전 자	다음의 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기관 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라. 민간이송업자 및 타 법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다음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가. 시내·외, 농어촌 및 마을버스 나. 전세버스 다. 특수여객자동차(장래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 라. 일반·개인택시
보 건 교 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도 로 교 통 업 무 에 종 사 하 는 경 찰 공 무 원	가. 교통경찰공무원 나. 의무경찰
산 업 체 안 전 관 리 책 임 자 등	가. 산업체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체 육 시 설 의 의 료·구 호 또는 안 전 업 무 종 사 자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요원 가. 전문체육시설 나.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다.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등
유 선 및 도 선 인 명 구 조 요 원	인명 구조요원
관 광 사 업 종 사 자 중 의 료·구 호 또는 안 전 업 무 종 사 자	다음의 시설의 의료·구호 및 안전관리자 가. 관광숙박업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다. 국제회의업 라. 카지노업 마. 유원시설업
항 공 종 사 자 또는 객 실 승 무 원 철 도 종 사 자 선 원	의 료·구 호 또는 안 전 에 관 한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자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체 육 지 도 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3.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붙임 5】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제 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붙임 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발급 대장

일련 번호	직업 ¹⁾	소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교육 일시	교육장소	비고

※ 연락처는 휴대폰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유선전화 확보
수료증 발급대장은 전산화(엑셀 등)하여 입력하고, 교육 결과보고 시 첨부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기입함

【붙임 7】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발급 대장

(심질환 환자 보호자용)

일련 번호	직업 ²⁾	소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교육 일시	교육장소	비고

※ 연락처는 휴대폰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유선전화 확보
비고란에 환자명 및 치료병원 기재 요망
수료증 발급대장은 전산화(엑셀 등)하여 입력하고, 교육 결과보고 시 첨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기입함

【붙임 8】

교육대상자 종사분야별 교육결과

(단위 : 명)

교육대상자 종사분야	교육횟수	계획인원	수료인원
계			
○ 심질환치료 환자 보호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대상자			
- 구급차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운전자			
- 보건교사			
- 경찰공무원 등			
- 산업체안전보건관계자등			
- 체육시설 의료·구호 안전업무종사자			
- 인명구조요원			
- 관광사업종사자 등			
- 항공 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등			
- 철도종사자 등			
- 선원 등			
- 소방안전관리자 등			
- 체육지도자			
○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